

韓日關係史研究 제68집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기술과 영토교육

나행주

韓日關係史學會

THE KOREA-JAPAN HISTORICAL REVIEW

2020年 05月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기술과 영토교육*

나 행 주**

【국문초록】

현재 일본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과(역사) 교과서 가운데 초등학교 3종, 중학교 8종, 고등학교 3종을 대상으로 일본의 영토교육 특히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죽도])에 대한 서술 내용을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아베 정권 하에서 보다 강화된 교과서 검정제도와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의 관련성, 학습지도요령과 동 해설서의 관련성, 그리고 해설서 내용과 검정기준과의 관련성, 나아가 영토교육 강화를 추진하는 아베 정권의 내각부, 문부성, 외무성, 독도 관련 지자체 시마네현, 정부 산하 및 민간의 각 기관들이 유기적·구조적 관련성 속에서 추진되는 영토교육의 메커니즘을 확인했다.

그 결론으로서 우선, 교과서 검정시스템에 의해 독도 기술(영토교육)이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한국의 불법점거”라는 가장 강도 높은 단계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점, 무엇보다도 교사용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명시된 내용이 그대로 교과서 내용에 직접 반영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 내용이 곧 교과서 검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국 일본 외무성의 외교적 주장이 그대로 학습지도요령 해설과 교과서 검정시스템을 통해 교과서에 기술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독도 교육은 내각부 및 문부성과 외무성, 지자체인 시마

* 이 논문은 흥익재단이 지원하는 일본 역사교과서 분석사업 [일본 초중고교과서 왜곡실태 분석 및 대책과 콘텐츠화를 위한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 건국대학교 사학과 초빙강의교수

네현이 하나가 되어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주의를 요하며, 최근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영토·주권전시관'의 개설을 통해 독도교육이 학교현장을 넘어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전제로 하면 아베 정권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의 독도 교육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일본 역사교과서, 독도(독도기술), 영토교육, 교과서 검정, 학습지도요령, 학습지도요령해설

◆ 차례

1. 머리말
2. 교과서 검정과 독도 기술
3.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와 독도 기술
4. 영토교육의 메커니즘
5. 결어를 대신해

1. 머리말

일반적으로 한 나라 국민의 역사인식·역사의식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의 역사교육을 통해 그 기초·토대가 형성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중심골격이 결정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교과서는 바로 그 나라 국민의 보편적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도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나타난 경향으로 일본의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의 역사교육의 특징은 영토교육 강화와 지나친 자민족·자문화 중시의 '애국심'과 '전통'을 강조하는 보수우경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일본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역사교과서 속에도 그러한 측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교육에 있어서의 보수우경화 경향은 2006년의 아베정권의 탄생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베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한 교육기본법의 개정(2006년)으로 예견되었고, 2009년~2011년의 약 3년간의 민주당 정권의 실정에 힘입어 2012년 다시 정권을 탈환해 제2차 아베내각이 탄생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이후에는 영토문제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 기술에 있어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이전 2011년도 중학교 사회과 검정을 통과, 2012~2015년까지 사용된 7종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지리와 공민교과서 등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면서 일본중학교 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특히, 60여 년 만에 개정된 ‘애국심’과 ‘전통’을 중시한 ‘교육기본법’과 이에 맞추어 새롭게 개정된 영토교육의 강화를 명시한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이 교과서 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¹⁾

아울러, 최근에 검토 대상을 2015년도 검정본²⁾ 중학교 사회과 역사교과서로 한정해 북방영토·센카쿠제도·독도 등 영토교육의 추이, 일본고대국가형성과정, 한반도(한국사) 및 한일관계사 관련 사항 등 역사교육과 관련된 서술 내용에 대해 2011년도 검정본과의 비교를 통해 서술 내용의 변화상과 거기에 나타난 역사관의 특징을 확인하였다.³⁾ 다만, 여기서는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더욱이 8종의 대상교과서 가운데 가

- 1) 줄고,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과 고대사 서술」, 『동국사학』 51, 동국사학회, 2011.12
- 2) 2015년 검정에서는 2011년 검정의 7종에 더해 새롭게 1종(마나비사)이 추가되어 총 8종 교과서가 2020년 현재 중학교 역사교육 현장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 3) 나행주,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 『식민사학의 고대사 왜곡과 영토문제』 홍익재단, ‘식민주의 역사학 비판과 전망 2019 제4차 Conference’ 자료집, 2019.08.23

장 채택률(시장점유율)이 높은 동경서적 교과서, 우익교과서 2종(육봉사와 자유사), 가장 진보적인 교과서(교육출판과 일본문교출판)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영토교육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검토 대상을 초중고교 사회과 교과서로 하여 교과서 검정, 학습지도요령 및 동해설서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근년의 두드러진 경향으로서 일본정부의 독도교육을 중심으로 한 영토교육 강화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2. 교과서 검정과 독도 기술

주지하는 것처럼, 우선 가장 중요시되고 학교 교육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의무교육 과정인 일본중학교 사회과의 교과과정은 지리·역사·공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학년은 지리와 역사를 함께 배우고 도덕에 해당하는 공민은 3학년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영토교육의 강화를 명시한 2008년 7월의 학습지도요령 개정 이후 영토, 특히 독도(일본명 ‘竹島=다케시마’)⁵⁾에 대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지리·역사·공민)의 기술이 강화되고 있음은 전고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독도에 관한 기술 내용의 특징은 이전(2011년 검정본)의 경우에는 주로 공민과 지리교과서에만 기술되어 있었고, 역사교과서에서는 교

4) 이 두 교과서는 대표적인 우익 소위 ‘새역모’ 그룹으로부터 ‘자학사관’ 교과서라 가장 비판받는 점에서도 그 경향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현재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율(시장점유율)은 동경서적-일본문교출판-교육출판-청수서원-육봉사-제공서원-자유사-마나비사 순이다.

5) 이하의 서술에 있어 일본교과서 내용이나 일본 측 자료의 직접 인용 외에는 독도로 표기하기로 한다.

육출판이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아울러 2011년도 검정본의 경우, ‘새역모’계의 두 우익교과서인 자유사·육봉사에는 독도에 관한 기술은 보이지 않았다. 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표 1〉 중학교 역사·공민·지리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 내용 비교표(2011년 검정본)

	교육출판	제국서원	동경서적	일본문교출판	청수서원	육봉사	자유사
지리	고유(2)	고유(2)	고유·점거(3)	고유·불법점거(4)	미발행	미발행	미발행
공민	(1)	(0)	고유·불법점거(4)	(1)	고유·점거(3)	고유·불법점거(4)	고유·불법점령(4)
역사	고유(2)	(1)	(0)	(1)	(0)	(0)	(0)

우선, 독도관련 기술 정도를 그 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 제1단계: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로 표현하거나, 독도를 지도상 일본의 국경선 안에 표시, 혹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키는 경우
- 제2단계: 독도를 직접적으로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는 경우
- 제3단계: 한국의 [점거·점령]이라 서술한 경우
- 제4단계: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경우

이다. 1단계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전제하에서의 서술이라면, 2단계는 이를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직접 주장하고 있으며, 3단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이 물리력을 이용해 강제로 점령·점거하고 있다고 주장, 4단계는 이러한 한국의 다케시마에 대한 점거·

6) 〈표 1〉 중의 ()안의 숫자는 각각 독도에 관한 기술의 정도(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0)은 관련 기술이 없음, (1)은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주장의 차이, (2)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3)은 독도를 일본고유의 영토+한국의 점거·점령, (4)는 독도를 일본고유의 영토+한국의 불법점거·점령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점령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중학교 사회과의 교육과정에서 1, 2학년의 지리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기술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교육인 3학년의 공민교과서에서 ‘국가와 향토에 대한 사랑’과 결부시켜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의미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뒤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역사교육(역사 교과서)에서도 독도 교육이 강화되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은 앞으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보다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먼저, 주의를 요하는 점은 문부과학성(이하,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시스템이 점차 지리와 공민에 이어 역사교과서 속의 독도 기술 강화로 나타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중학교 교육출판과 고등학교 실교출판의 경우를 제시해 두기로 한다. 참고로 교육출판사는 새역모계의 우익 세력으로부터 대표적인 자학사관·암흑사관 교과서의 하나로 지목되는 교과서이다.⁷⁾

여기서 두 역사 교과서의 독도에 관한 ①검정신청본의 내용, 이에 대한 문부성의 ②검정의견제시, 이를 이어받아 해당 출판사가 제출한 ③수정본의 변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 이점은 대표적인 우익단체(일본회의)나 새역모 그룹이 7개 교과서를 대상으로 행한 교과서평점 결과에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면 「공민교과서 영토에 관한 기술 채점표」에서 육봉사와 자유사는 12점, 청수서원 7점, 동경서적 10점, 일본문교출판 5점, 제국서원 4점, 교육출판 3점을 받고 있다. 즉 교육출판 교과서의 경우 우익세력으로부터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점을 보면 그 성향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역사교과서 비교분석표」에서는 육봉사 12점, 자유사 15점에 대해 일본문교출판은 2.5점, 교육출판은 3.5점을 받고 있다.

사례 1) 「교육출판」⁸⁾

①검정신청본: 역사의 창 영토문제 다케시마와 센카쿠제도(251쪽)

현재 일본의 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에 대해 반환교섭을 계속하고 있는 북방영토(홋카이도) 이외에 다케시마(시마네 현)와 센카쿠제도(오키나와 현)를 둘러싼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해에 위치한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그 영토를 둘러싼 주장에 상이가 있어,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동지나 해에 위치한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중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 사진 게재

②검정의견: 영토문제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③수정문: 일본의 영토를 둘러싸고~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센카쿠제도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는 북방영토(홋카이도)에 대해서는 일본에의 반환을 요구하는 교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방영토와 함께 다케시마(시마네 현)와 센카쿠제도(오키나와 현)도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해에 위치한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그 영토를 둘러싸고 주장에 상이가 있어,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동지나해에 위치한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 사진 게재

교육출판 교과서의 경우, 검정신청본 단계의 독도 관련 기술을 보면, 물론 일본의 영토라는 점을 전제로 한국과의 사이에 **상호 주장의 상이(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을 적고 있었으나 문부성의 검정을 거친 이후의 수정본에서는 분명하게 **독도(다케시마)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검정을 통해 (1)단계에서 (2)단계로 그 정도가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문부성 검정의 결과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불법점거로, 센카쿠제도(침각열도)는 독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그 표현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타와라 요시후미 씨⁹⁾에 의하면, 일본이 교과서 검정심의회의

8) 교육출판 검정본<<中學社會 歴史>>(2011). 이 검정본은 동북아역사재단이원 우 박사의 호의로 열람할 수 있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를 표한다.

9) '子供と教科書ネット21' 대표를 역임하는 씨는 일본 내의 교과서 왜곡문제

‘심사요령’을 개정해, “**애국심 불충분**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정심의회가 신청도서 심사도 할 필요 없이 바로 불합격처리하고, 재출판조차 아예 불가능하게 규정을 개정했다”고 하며, 이로써 “사실상 정부 의도에 맞는 국정교과서가 될 위험성이 한층 강해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교과서 검정의 중요한 잣대가 개정된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나라와 향토에 대한 사랑**’ 다음 아닌 바로 문부성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애국심**’의 정도라는 매우 상대적이고 일방적인 기준임을 잘 알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일본의 교과서 편찬 시스템에 있어 검정제도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심히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는 곧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교 「일본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수정 사례를 제시하기로 한다.¹⁰⁾

사례 2) 「실교출판 고교 일본사 B-1」¹¹⁾

①검정신청본

현재의 竹島에 해당하는 섬에 대해, 일본 정부는 1877년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라고 판단하였다.(161쪽)

일본 정부는 일러전쟁의 군사적 필요성 등으로 1905년 1월 竹島를 시마네현의 관할로 한다고 결정하였다.(179쪽)

②검정의견

학생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③수정문

일러전쟁 중인 1905년 1월, 일본 정부는 竹島를 시마네현의 관할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1952년부터 한국 정부가 竹島(한국명 독도)를 실효 지배

를 시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 10)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및 독도 관련 기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홍성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2016년과 2017년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14, 동북아역사재단, 2017.12 참조.
- 11) 현재 일본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검정을 받은 것인데, 실교출판의 경우는 2017년에 검정을 마쳤다.

하려고 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내용이 최초의 검정신청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실교출판의 경우, 검정의 결과 검정신청본(㉠)의 내용 전체가 삭제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의 내용은 메이지 초기의 일본 정부가 직접 공식적으로 독도와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독도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물론 아베 정권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검정을 통과할 수 있는 기술 내용이 아니었다. 올바른 역사서술이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왜곡·말살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문부성이 검정의견으로 제시한 ‘학생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는 구체적으로는 실교출판 검정신청본의 경우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竹島를 정식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기술”¹²⁾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환언하면, 검정신청본 단계에서의 기술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의 경위·이유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 러일전쟁 시기의 군사적 이유에서 일방적 강제적으로 편입시킨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즉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적기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학계와 일본정부의 사실인식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웅변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중학교 교육출판과 고등학교 실교출판의 사례를 통해 독

12)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독도 관련 일본 초·중고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의 문장 그대로이다.

도에 관한 교과서의 기술이 문부성의 검정에 의해 어떻게 강화·개변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과서검정 시스템의 결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서 중학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동경서적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 내용의 변화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우선, 앞서 본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1년도 검정의 동경서적 교과서 가운데에 보이는 독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 그 강도가 매우 높은 (3)단계와 (4)단계의 기술이 나타나 있었으나, 역사교과서에서는 독도에 관한 기술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동경서적 공민교과서의 독도에 관한 기술내용의 변화를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³⁾

- ①2001년판-[일본의 영해와 경제수역](145쪽)이라는 지도 속에 직접적으로 독도(다케시마)라는 지명표기는 없으나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 ②2005년판-[일본의 영해와 경제수역](155쪽)이라는 지도 속에 직접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더욱이 국경선을 표시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북방영토>와 <竹島와 센카쿠제도>에 관한 설명문이 곁들여 있는데, 후자에는 “시마네현 오키제도의 북서에 위치한 죽도, 오키나와 현 사키시마제도의 북쪽에 위치한 센카쿠제도는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155쪽)라고 설명하고 있다.
- ③2011년판-[일본의 영역과 경제수역](151쪽)이라는 지도와 함께, 직접 “(죽

13) 아울러 일본 사회과 교과서 속에 보이는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로, 현행본과 2011년도 검정통과본(지리 4종[일본문교출판·동경서적·교육출판·제국서원], 역사와 공민 각 7종[자유사·육봉사·제국서원·동경서적·일본문교출판·일본교육출판·청수서원] 교과서)을 대상으로 한 일본교과서의 독도 기술 내용의 추이에 대해서는 남상구 논문(「일본 교과서 독도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1, 동북아역사재단, 2011 및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기술 현황과 전망」 『교과서연구』 통권 76, 2014)을 참조.

도는) 오키제도 서북쪽에 위치하고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서 일본은 한국에게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151쪽)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 동경서적의 사례를 통해서도 최근 일본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 내용의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독도를 자국 영토의 일부로 인식하는 단계(2001년)에서 점차 ‘고유영토’로 주장하고(2005년),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최근에는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불법점거’라고 명시하여 불법성을 강조하는 단계(2011년)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문부성의 교과서검정을 매개로 한 직접적인 작용·강제가 있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상을 통해, 2011년 검정 교과서(2012~2015년도 사용)의 경우, 일본 중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영토교육 즉 독도에 관한 기술·교육은 그 출판사(집필자)의 보수·진보 성향과는 관계없이 7개의 모든 출판사가 예외 없이 자사가 출판하는 역사·공민·지리 교과목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최소한 2단계 이상의 서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독도를 ‘**일본고유의 영토**’이며¹⁴⁾, 이를 **한국이 ‘불법 혹은 강제로 점거·점령’**하고 있다¹⁵⁾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의 아베정권에 의한 교육기본법 개정과 이에 기초한 2008년의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의 개정 이후 이전과는 확연히 달리 독도를 포함한 영토교육이 중학교 교육현장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교과서의 기술 내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14) 중학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교육출판의 지리와 역사, 제국서원의 지리 교과서에 2단계의 서술이 보이고 있다.

15) 중학교 사회과 가운데 동경서적의 지리와 공민, 일본문교출판의 지리, 청수서원의 공민, 육봉사의 공민, 자유사의 공민 교과서에서 가장 기술 정도가 높은 3~4단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부성의 검정방침이 2014년 1월에 변경·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새로운 검정기준에는 역사교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미확정된 사실을 강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 등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도록 기준이 바뀌었고, 영토교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나)일본 각의결정 등 정부 견해를 근거하여 기술하도록 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변경이 된 것이다. (나)는 말할 나위도 없이 보다 강화된 독도에 대한 교과서 기술의 강요·강제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영향을 2015년에 검정을 통과한 현행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동경서적과 두 개의 대표적인 우익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내용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우선, 동경서적의 독도 관련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경서적¹⁶⁾

① 「국경과 영토의 확정」(168쪽)

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관계에서는 국경선은 애매모호했습니다. 그에 대해 구미의 근대적인 국제관계에서는 국경선은 확실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아시아제국 가운데 가장 빨리 근대적인 국제관계를 배우고자 했던 일본에게 있어서 국경선을 정하고 영토를 확정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측주-동지나(중국)해의 침각제도는 1895년에 오키나와 현에, 일본해의 죽도는 1905년에 시마네 현에 각각 편입되었습니다.

② 「넓어지는 일본의 외교관계」(250~251쪽)

한국과는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로 승인했습니다.

측주-한국과의 사이에는 죽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③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와 그 역사」(252쪽)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주변국들과 우호관계를 깊게 해 왔습니다만,

16) 동경서적, 『新しい社會 歴史』(2015년 검정본).

한편으로 현재에도 영토를 둘러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사이에 죽도(시마네현 오키노시마 隱岐島정), 러시아연방과의 사이에는 북방영토(홋카이도 네무로시 등), 그리고 중국이나 대만과의 사이에 첨각제도(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입니다. 이들은 모두 **일본의 고유의 영토**입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역사적인 배경**을 근대로 거슬러 올라가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죽도

죽도에서는 에도시대 초부터 막부의 허가를 얻은 鳥取번의 주민(정민)이 어업을 행하여 아시카(강치)나 전복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 아시카업이 본격적으로 됨으로써 일본정부는 러일전쟁 중의 1905(메이지38)년1월에 각의결정을 행하여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2월22일에 지사가 고시했습니다. 그 이후 죽도에서의 어업은 시마네현의 허가제가 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1941(쇼와16)년에 중지되던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후 한국은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 당시의 한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승만 라인'이라 불리는 선을 공해상에 일방적으로 그어 그 한국 측에 죽도를 집어넣어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엄중히 항의를 했습니다만, 1954년부터 한국은 죽도에 경비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이 죽도문제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마네 현은 2005(헤이세이17)년에 죽도의 시마네 현에의 편입을 고시한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정하는 등 반환을 요구하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정부도 외교노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 (1)시마네현의 고시(시마네현 죽도자료실 소장)
- (2)메이지시대의 죽도 사진(개인소장) 1907년경에 시마네현의 사진사가 촬영한 사진과 그 설명문입니다.
- (3)아시카(강치) 어업의 모습(1935년)과 아시카어업의 허가증(시마네현 죽도자료실 소장)

이상의 동경서적의 경우 현재 중학교 교과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아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타 교과서에 비해 독도에 관한 내용을 가장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이 주의를 요한다.

즉 ①에서는 “근대국가에서 국경선을 정하고 영토를 확정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라고 기술하면서, 주)에서 “동중국해의 첨각열도는 1895년에 오키나와 현에, 일본해의 죽도는 1905년에 시마네 현에 각각 편입되었습니다.” 라고 그 역사적 경과를 언급하고 있고, ②에서는 “한국과는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로 승인했습니다.”라고 기술한 부분에 주)로 “한국과의 사이에는 죽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라고 언급하여 마치 독도문제의 책임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본문의 기술에 이어 ③에서는 2쪽(252~253쪽)에 걸쳐,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와 그 역사」에서 북방영토, 첨각제도, 독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와 관련 사진 등을 다수 활용해 역사적 배경·경위를 아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경서적의 경우, 지리와 공민에 이어 역사교과서에서도 독도 관련 기술이 가장 강도 높은 (4)단계 서술 즉 독도(죽도)는 일본고유 영토+한국의 불법점거를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다른 역사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경서적 교과서가 비교적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점과는 매우 대조적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다음으로 2개의 대표적인 우익교과서의 독도관련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육봉사¹⁷⁾

① 「근린제국과의 국경확정」(173쪽)

지도 제시-일본의 국경선 안에 독도(죽도)가 위치한 지도를 제시하고 있음.

② 역사 뷰 코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국경의 섬들」(173쪽)

죽도(다케시마)=죽도는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우리나라의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페이지 38)년

17) 육봉사, 『新編 新しい日本の歴史』(2015년 검정본).

에 각의결정에 의해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영토로 삼았습시다만,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지금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③「세계를 위한 일본의 역할」(272~273쪽)

외교에는 타국과 협조하는 정신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입장이나 국익을 지켜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북해도)와 죽도(시마네현)는 각각 러시아와 한국에 **불법점거 된 상태**입니다. [173쪽 관련 내용] 우리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침각제도(오키나와현)의 주변해역에는 중국의 감시선이 침입하는 등 영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군사력의 증강이 아시아제국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사¹⁸⁾

①「조선반도(한반도)와 일본」(272~273쪽)

竹島는 **일본고유의 영토**이나 한국이 죽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하고, 1953년부터 무장경찰관을 상주시켜 **부당한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죽주 죽도=죽도는 에도시대에는 돛토리(鳥取)번의 사람이 막부의 허가를 얻어 어업을 행하고 있었다. 1905(페이지 38)년,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토로 하여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한 이래 **실효지배**를 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독도에 대해서 육봉사의 경우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국경의 섬들」(173쪽)에서 북방영토, 침각제도와 함께 독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독도(죽도)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죽도는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우리나라의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페이지 38)년에 각의결정에 의해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영토로 삼았습시다만,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지금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본 동경서적과 우익계 육봉사의 기술 내용에 차이가 전

18) 자유사, 『新しい歴史教科書』(2015년 김정본).

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유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이미 예상되었던 것처럼 가장 강도가 높은 (4)단계의 기술에 역사적 배경의 제시와 함께 '실효지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사 교과서의 기술에 따르면, 일본의 중학생들은 독도(죽도)에 대한 실효지배가 1953년¹⁹⁾을 전후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것도 부당하게 바뀌었다고 교육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위안부문제에 대한 기술이 전적으로 사라진 것과는 크게 대조적으로 영토문제, 즉 독도문제는 이제 중학교 사회과의 지리와 공민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2015년도 검정본 이후의 교과서 기술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말해주는 역사적 근거로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현행 교과서에서는 일본 영유권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①에도시대인 17세기 중엽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으며, ②메이지시대인 1905년 시마네 현에 편입했고, ③패전 후인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²⁰⁾

이상에서 검토한 독도 관련 교과서 기술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강도가 높은 (4)단계의 표현에 더하여 일본 측이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이전 교과서(2011년 검정본)와 현행 교과서(2015년 검정본)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 아울러, 일본 교과서의 독도 관련 사항 중에서 한국의 불법 점거 혹은 실효지배 시기와 관련해 1952년, 1953년, 1954년 등 교과서에 따라 연대 표기상에 차이가 보이는데, 이는 소위 이승만 라인이 선언된 시기 혹은 독도경비대의 창설 및 설치된 시기에 연유하고 있다.

20) 제국서원, 《中學生の歴史》(2015년 검정본), 247쪽의 기술이 대표적이다.

〈표 2〉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 내용 변화표

역사	교육출판	일본문교출판	제국서원	동경서적	육봉사	자유사
2011년 검정본	(2)고유	(1)주장 차이	(1)주장 차이	(0)	(0)	(0)
2015년 검정본	고유+불법점 거(4)+평화적 해결 노력	고유+점거(3)+ 평화적 노력	고유+불법점 거(4)+역사적 근거 제시	고유+불법점 거(4)+역사적 근거 제시	고유+불법 점거(4)	고유+불법 점거(4)+ 실효지배
변화(강화) 정도	2단계 업(강화)+알파	2단계 업(강화)+알파	3단계 업(강화)+알파	4단계 업+역사적 근거	4단계 강화	4단계 강화 +실효지배

이상을 요컨대, 2006년 교육기본법의 개정과 그에 이은 ‘독도’ 기술을 명시한 학습지도요령의 영향으로 영토(독도)관련 기술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서 지리, 공민, 역사의 일부에 최소한 (2)단계 이상의 독도관련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고, 2019년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독도기술은 2014년 검정기준 강화와 학습지도요령해설 개정의 영향으로 그 강도가 매우 높은 (3)단계 내지 (4)단계의 기술로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9년(3월 26일)에 검정이 있었던 초등학교 사회과(6학년) 3종²¹⁾의 독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초등학교 사회과(6학년) 교과서의 독도 기술 내용

출판사	교과서 내용
東京書籍 6-2(153쪽)	「주변국과 일본」한편으로 일본고유의 영토인 죽도를 한국은 1954년부터 불법으로 점령 하고 있고, 일본은 항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日本文教出版 (224~225쪽)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을 확정하는 일은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죽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과 배타적 경제수역 지

21) 教育出版, 『小學社會』; 日本文教出版, 『小學社會』; 東京書籍, 『小學社會』. 아울러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황용섭, 「일본 초·중학교 교과서 독도 관련 내용 비교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56, 2017.4 참조.

	도)(224쪽). <학습자료> 죽도-시마네현 앞바다에 있는 죽도는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의 영토 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u>한국에 항의를 지속하고</u> 있습니다.(225쪽) '독도(죽도)와 시마네현 지도와 독도 사진 게재'
教育出版 (226쪽)	「앞으로의 일본과 우리들」 죽도(시마네현) 사진-죽도는 일본의 영토 이지만 1954년부터 한국이 불법적인 점거 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u>이에 항의함과 함께</u> 국제적인 장에서 대화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 하자고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위 <표 3>을 통해 확인한 초등학교 사회과(6학년) 2019년도 검정본은 2017년에 전면 개정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첫 적용을 받는 교과서라는 점에서, 또한 일본 초등학교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독도 교육의 실태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경시할 수 없다. 구체적인 독도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는 대한민국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해 '일본해상에 있는 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²²⁾

즉, 일본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는 독도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이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 항의를 명시하고 있어, 기술의 정도로서는 모두 가장 강도가 높은 (4)단계 기술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일본은 영토주권 행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에 항의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일본정부는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 신중하고 평화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일본 측의 의도로서는 국제사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한

22) 이러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즉 독도는 일본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일본 측의 항의, 평화적 해결 노력이라는 기술 내용은 앞서 본 중학교의 교과서 서술 내용 그대로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독도교육 즉 영토교육이 일체화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불법점령 즉 불법성을 강조함으로써 독도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한국 측에 있음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기술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²³⁾, 일본은 정당(선), 한국은 부당(악)이라는 부정적·적대적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또한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고 아직 사고가 갖추어지지 않은 단계에 있는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들에게 지나친 역사교육·영토교육, 더욱이 잘못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과도한 애국심과 국토 사랑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된다. 이는 한일 양국의 자라나는 세대가 서로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양국의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²⁴⁾

3.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과 독도 기술

지금까지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검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일본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내용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

23) 말할 나위도 없이 독도는 러일전쟁 중에 일본에 침탈당한 후에 되찾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아울러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식민지 침탈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자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 온 무라야마 담화 이래의 과거 일본 정부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4) 초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에는 6학년 사회의 학습 목표로 “다각적인 사고와 이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심정,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국민으로서의 자각이나 평화를 바라는 일본인으로서 세계 나라들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을 양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교과서 서술내용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보았다. 무엇보다도 의무교육의 중심인 중학교의 경우, 종래의 지리와 공민을 중심으로 하는 독도교육이 역사교과서에서도 같은 강도로 강화·강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교과서 검정의 결과로서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 즉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점거를 전제로 여기에 일본이 취하는 모든 행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과 동시에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본 장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강제하는 장치라 할 수 있는 『학습지도요령』²⁵⁾ 및 『학습지도요령해설』²⁶⁾, 특히 후자가 교과서 기술 내용(즉 교과서 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해설서와 교과서 검정의 밀접한 관련성은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²⁷⁾ 2006년도에 성립된 교육기본법(12월)의 개정 이후 2008년 새로운 교육기본법에 기초해 제정된 신 학습지도요령(3월) 및 동 해설서(7월)가 실제로 2011년도 검정에 그대로 적용되어 교과서의 독도 서술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무엇보다도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맞춰 마련된 학습지도요령에는 영토문제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독도(일본명 죽도[다케시마])에 대해서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우리나라 영토·영

25) 이하의 서술에서는 필요에 따라 ‘요령’이라 약칭한다.

26) 이하의 서술에서는 필요에 따라 ‘해설서’라 약칭하기로 한다.

27) 양자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는 남상구,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기술 현황과 전망」, 『교과서연구』 통권 76, 2014, 동,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인터넷자료, 동북아역사재단, 2012, 홍성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2016년과 2017년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14, 동북아역사재단, 2017 등의 연구를 참조.

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영토교육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 즉 요령은 독도가 북방영토와 같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를 한국과 러시아가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에 관한 교과서의 기술 내용에 있어 종래보다 일본 측의 입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며 동시에 향후의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영토 교육 강화가 충분히 예상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독도 관련 교과서 기술 강제, 영토교육 강화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점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 자체보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내용이 교과서의 영토 관련 서술내용이나 교과서 검정 과정에 있어서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의무교육제학교교과용도서검정기준’(1999년 3월 4일 문부성고시 제33호)에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교육의 목표 및 학교교육법과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것이 검정의 목표”라고 명기하고 있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기본법과 이에 기초한 학습지도요령이 교과서 검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두드러진 일본정부(문부성)의 교과서 검정기준의 강화는 곧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서의 개정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문부성에 의한 해설서의 개정은 2006년에 아베정권이 단행한 교육기본법의 개정에 맞춰 2008년에 이루어졌고 이후 2014년에 중고등학교 해설의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2017년~2018년에 걸쳐 초중교(2017년)와 고교(2018년)의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이 전면개정되었다.²⁸⁾

2008년 이후, 2014년에 중고교 해설서가 일부 개정된 배경으로는 우

28) 새로운 학습지도요령해설은 초등학교는 2020년, 중학교는 2021년, 고등학교는 2022년부터 점차적으로 적용된다.

선 일본사회의 보수우경화 경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보다 직접적으로는 2012년 말의 제2차 아베정권의 재탄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 하나, 아베 정권의 재탄생과 함께 독도 관련 기술 강화를 담은 새로운 해설서 개정이 추진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2011년10월의 동경도 교직원조합의 2011년도 검정본 교과서에 대한 성명²⁹⁾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교과서검정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요령과 동 해설서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는 것처럼, 학습지도요령은 문부과학성(문부성)이 고시하는 초·중·고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소위 1조교)의 각 교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정한 것이다. 한편, 문부성은 학습지도요령의 보다 상세한 사항을 기재한 『학습지도요령해설』을 발행하는데, 학습지도요령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³⁰⁾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역사교육 및 영토교육과 관련된 사회과 교과목에서는 학습지도요령해설이 제시한 공식이 교과서에 실제로 기술되고 있다. 결국 교과용 도서 검정 시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사실상의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개정된 학습지도요령해설의 서언에는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어 요령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29) 일본 도쿄도 교직원 조합의 2012년도판 중학교 신교과서검토 자료(2011)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한국이 불법점거’라고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견해를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면 ‘감정적인 내셔널리즘’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다케시마는 센카쿠제도, 북방4도와는 다르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0) 즉 教科用図書檢定規則 등에도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학습지도요령해설〉은 대강적인 기준인 학습지도요령의 기술의 의미나 해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본 개정의 개요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기 바라고 금후 각 학교에 있어서 **영토에 관한 지도나 자연재해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관한 지도에 있어서는 개정 후의 〈학습지도요령해설〉을 충분히 참고한 위에서 그 취지를 전제로 적절하게 취급하도록** 부탁한다.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초중고의 학교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습지도요령이 아니라 「학습지도요령해설」임을 알 수 있다. 아베의 일본정부가 영토교육, 특히 독도교육의 강화를 위해 학습지도요령해설의 개정을 실시한 배경이자 최대의 이유이다.

전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도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한 2008년의 해설서의 개정 내용은 2011년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로서 중학교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 3-4단계의 강도 높은 독도기술로 나타났다. 제2차 아베정권의 탄생 이후 단행된 2014년의 해설서 일부 개정은 2015년도 검정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지리, 공민을 넘어 역사교과서의 독도 기술 강제, 강화로 나타나 전8종 교과서에 제4단계의 독도 기술이 현실화 되었다.³¹⁾ 즉 2014년의 학습지도요령 해설 개정의 결과로서 중학교의 사회과(지리, 역사, 공민) 모든 교과서에 가장 강도 높은 독도 기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1) 고등학교의 경우는 2008년의 해설 개정이 2012년의 검정에, 2014년의 해설서 일부 개정이 2016~2017년의 검정 기준으로 각각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고교 역사(일본사·지리)교과서 독도 서술 내용 변화를 보면, 2012년 검정본 총39종 중 54%에 달하는 21종에 독도 관련 내용을 명시(약 46%의 18종에 독도에 대한 언급 없었음)하고 있고, 2016년 검정본(현행 사용본) 지리교과서의 경우는 약 70% 정도가 죽도(독도)는 일본 고유영토+한국 불법 점거를 명시하고 있어 가장 강도 높은 (4)단계 기술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고교 교과서 독도 관련 기술 내용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홍성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 2016년과 2017년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 『영토해양연구』 14, 동북아역사재단, 2017 참조.

이하에서는 2014년에 단행된 해설 일부 개정³²⁾ 내용을 개정 이전과 이후의 요령 및 해설 내용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 실질적인 교과서 기술 내용(교과서 검정 기준)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로 한다. 특히, 여기서는 일본 교육현장에서의 영토교육과 역사교육의 중심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의무교육과정의 중심인 중학교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³³⁾

1) 2014년 해설 개정과 교과서 기술

주지하는 것처럼, 영토교육·역사교육의 중심 대상은 의무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독도에 관한 교육 내용 즉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가장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내용을 정리해 보고, 이와 교과서 내용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행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각 교과목의 요령과 개정된 해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1〉 중학교 해설서 일부 개정(2014년) 전후 내용 비교

분야	요령 및 해설서 개정 전후 내용
지리	(요령) 「영역의 특색과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海洋國家로서의 特色을 취급함과 함께 北方領土가 우리나라 고유의 領土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착목하도록 할 것.

32)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은 2014년 1월 28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33)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습지도요령해설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전제로 하여 보다 높은 단계의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학교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한 독도 기술에 대해서는 남상구,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인터넷자료, 동북아역사재단, 2012 참조.

<p>지리</p>	<p>(해설 개정전) 「領域의 特色과 變化」 중의 「領域」이란, ... (中略) ... 또한 우리나라는 사면 환해의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목하도록 하고, 국경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하는 영토문제나 경제수역의 문제 등에 착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경우,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착목시키도록 할 것(내용의 취급)이라 되어있는 점에서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데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 적확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죽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상위(相違)]가 있는 점 등에도 언급하고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p> <p>(해설 개정후) 「領域의 特色과 變化」 중의 「領域」이란, ... (中略) ... 또한 우리나라는 사면 환해의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목하도록 하고, 국경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하는 영토문제나 경제수역의 문제 등에 착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경우,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착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북방영토나 죽도에 대해서는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데 각각 현재 러시아연방과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 죽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 적확하게 취급하고,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그 위치나 범위와 함께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p>
<p>역사</p>	<p>(요령) 領土의 확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p> <p>(해설 개정전) 「領土의 畫定」에서는 러시아와의 領土의 확정을 비롯하여 琉球의 問題나 北海道 개척을 취급한다. 그 경우, 중국이나 조선과의 외교도 취급한다.</p> <p>(해설 개정후) 「領土의 畫定」에서는 러시아와의 영토 확정을 비롯하여 琉球의 문제나 北海道의 개척을 다룬다. 그 경우, 우리나라가 國際法上 正當한 근거에 기초해 竹島, 尖閣諸島를 正식으로 領土로 편입한 경위도 언급한다. 또한 中國이나 朝鮮과의 외교도 취급한다.</p>
<p>공민</p>	<p>(요령) 「世界平和의 실현」에 대해서는 領土 (領海, 領空을 포함함), 國家主權, 主權의 相互尊重, 國際連合의 活動(역할) 등 基本的인 사항을 전제로 이해시키도록 유의할 것.</p> <p>(해설 개정전) 그 경우, 國家間의 문제로서 領土 (領海, 領空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미해결의 문제도 남아있으며, 平和的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p>

는 점, 국제사회에 있어서 國家나 國際機構 이외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해설 개정후)

그 경우, 地理的 分野, 歷史的 分野에 있어서의 학습 성과를 전제로 國家間의 문제로서 領土(領海, 領空을 포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固有의 領土인 北方 領土와 竹島에 관해서 未解決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이나 현상에 이른 경위,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主張하고 있는 입장,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解決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인 尖閣諸島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는 현상에 이른 경위, 우리나라의 정당한 입장을 이해시키고 尖閣諸島를 둘러싸고 해결해야만 하는 領有權의 문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2014년에 일부 개정된 중학교 지리와 공민, 역사교과목 해설서의 요지 및 개정 전후의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개정 해설서의 요지는 지리의 경우,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북방 영토는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다. 독도의 경우,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고유의 영토+한국의 불법점거라는 점을 이해시키도록 하고 있다. 결국, 지리교과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개정을 전후해 서술 정도가 (1)단계³⁴에서 (4)단계로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공민의 경우, 북방 영토와 독도에 대해서는 침각제도와 달리 장래 해결해야 할 미해결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한국의 불법점거 강조)을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독도 관련 내용은 가장 강도가 높은 (4)단계의 고유영토+불법점거를 명시한 지리해설서의 내용이 공민과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 공민에서는 미해결문제로 남아 있다는 점, 일본의 평화적 문제해결 노력과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 역사에서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34) 개정 전의 해설에는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죽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상이가 있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하도록 명기하고 있는데, 이는 독도 서술 단계로서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달리 말하면, 해설서 일부 개정으로 인한 변화는 영토교육의 경우, 기존의 북방영토 문제 중시에서 북방영토와 같은 정도의 독도 내용 추가로 변화되었고, 구체적인 독도 기술의 경우, 이전의 가장 낮은 제1단계 서술에서 가장 높은 제4단계 서술로 급속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독도 기술의 강화를 요구하는 해설서 개정 내용이 교과서의 서술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5년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교과서로 평가되는 교육출판과 일본문교출판의 교과서 내용을 제시해 두기로 한다.

교육출판(257쪽)

죽도는 일본해에 위치하는 동도와 서도 등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1905(메이지38)년의 각의결정으로 '죽도'로 명명되어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1954(쇼와29)년부터 섬에 경비대를 상주시켜 불법적인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항의함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합의에 의한 해결을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문교출판(265쪽)

죽도에 대해서는 약간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정부는 1905년에 각의결정에 의해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정식으로 일본 영토로 삼았습니다. 그 후, 1951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할 영토 범위에 죽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에 죽도를 포함시키도록 요망했습니다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 한국은 「중략」 1954년에는 경비대를 죽도에 상주시킴과 함께 숙사와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설치했습니다. 일본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위에 거듭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동년 죽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안을 한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을 통해 해설서의 내용이 검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 그 결과로서 해설서의 내용이 곧 교과서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환언하면 해설서의 내용이 교과서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 결국 검정의 기준이 바로 해설서의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2) 2017, 18년 해설 전면 개정과 교과서-초중고 경우

2014년의 해설서 일부 개정에 이어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초중고교의 사회과 해설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 새로운 해설서 개정은 점차적으로 2020년에 초등학교, 2021년 중학교, 2022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미 공표된 이 새로운 개정 내용은 이미 2019년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2020년의 중학교 검정, 그리고 2021년부터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의 실질적인 검정기준으로 작용할 것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우선, 2017년 개정 초등해설 내용과 현행 초등 5학년 사회과 교과서 3사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⁶⁾

35)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2014년 1월의 학습지도요령해설의 개정으로 인해 지리교과서의 독도 기술 내용이 이전보다 그 정도가 훨씬 더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국서원의 「지리 A」 경우를 보면, 2012년 검정본에서 (1)단계의 서술에 그치고 있었으나 2016년의 검정본에서는 (4)단계의 서술로 강화되고 있다. 즉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죽도(사진)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에서 “일본해에 있는 죽도는 1905년에 메이지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로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죽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를 3번이나 제안해 왔지만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로 강화되었다.

36) 일본문부과학성, 『소학교 학습지도요령(헤이세이29년 고시) 해설』 사회편(헤이세이 29년7월)에 의한다.

〈표 4-2〉 개정(2017년) 초등학교 사회과(5학년) 요령 및 해설

항목	내 용
요령	<p>5학년 학습목표-우리나라의 국토의 지리적 환경 내용-세계에서의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 국토의 구성, 영토의 범위 등을 대체적으로 이해할 것. 내용의 취급-[영토의 범위]에 대해서는 죽도와 북방영토, 첨각제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점에 언급할 것.</p>
해설	<p>「해설」 영토의 범위에 대해 지도할 경우의 배려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영토의 범위에 대해서 지도할 때는 죽도와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 첨각제도는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영토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라는 점 등에 언급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죽도와 북방영토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데 현재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는 죽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 거듭 항의를 하고 있는 점, 북방영토에 대해서 러시아연방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하도록 한다. 나아가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유효하게 지배하는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언급하도록 한다. 그 경우,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지도하도록 한다.</p>

새롭게 개정된 초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내용은 종래의 독도=일본고유 영토+한국의 불법점거라는 (4)단계 기술에 더해 앞서 본 2014년에 일부 개정된 중학교 사회과의 해설 내용이 그대로 추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3가지로 지리에서 강조한 한국의 불법점거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 공민에서 중시한 평화적 해결 노력 강조, 그리고 역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주장이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다음에 보는 현행 5학년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과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교육출판의 교과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2004년의 검정기준 강화, 다름 아닌 해설서 일부 개정 내용의 요점이 중고교 교과서는 물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표 4-3〉 사회(5학년) 교과서 2014년 검정본 현행 교과서 내용

출판사	교과서 내용
東京書籍 5년 상 (9쪽)	〈영토를 둘러싼 문제〉 일본해상에 있는 죽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입니다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日本文教出版 5년 상 (9쪽)	〈학습자료 영토를 둘러싼 과제〉 일본해에 있는 죽도는 일본고유의 영토 입니다만 현재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지나해에 있는 첨각제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이지만 중국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도(시마네현) 사진 게재' 8쪽 「일본의 위치와 범위」 죽도를 일본해 표기와 함께 영해 내에 표시한 지도 게재
教育出版 5년 상 (12쪽)	〈일본고유의 영토, 죽도와 첨각제도〉 죽도와 그 주변 사진-시마네현의 죽도는 일본의 영토 이지만 1954(쇼와29)년부터 한국이 불법적인 점거 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항의함과 함께 국제적인 장에서 대화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촉구 해 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죽도 사진 게재(13쪽)

아울러, 전장에서 본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9년 검정 초등학교 교과서는 앞으로 적용될 2017년 개정 해설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다. 즉 동경서적과 일본문교출판의 경우는 고유영토+불법점거에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일본문교출판의 경우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과의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내용이 그대로 교과서 기술이 되는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새로 개정된 중학교 사회과 요령과 해설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³⁷⁾

〈표 4-4〉 개정(2017년) 중학교 사회과 요령 및 해설

분야	요령 및 해설 내용
공민	(요령)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함), 국가주권]에 대해서는 관련시켜 취급하여, 우리나라가 고유의 영토인 죽도나 북방영토에 관해 남겨져 있는 문제의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나 첨각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만 하는 영유

37) 일본문부과학성,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헤이세이29년 고시) 해설』 사회편 (헤이세이 29년7월)에 의한다.

<p>공민</p>	<p>권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룰 것. (해설) 그 경우,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지리적 분야에 있어서 [영역의 범위나 변화와 그 특색], 역사적 분야에 있어서 [영토의 획정] 등의 학습 성과를 전제로 국가 간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고유의 영토인 죽도나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도로후)에 관해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 영토문제의 발생에서 현재에 이른 경위, 및 도항이나 어업, 해양자원개발 등이 제한되기도 하고, 선박의 나포, 선원의 억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과거에는 일본 측에 부상자가 나오기도 하는 등 불법점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우리나라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국가주권과 관련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첨각제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는 현재에 이른 경위,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도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첨각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만 하는 영유권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p>지리</p>	<p>(요령) [영역의 범위나 변화와 그 특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을 언급함과 함께,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언급하도록 할 것. 그 때,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취급할 것. (해설) [영역의 범위나 변화와 그 특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을 거론함(내용의 취급)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이도를 포함한 대소 다수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활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이나 다른 나라들과 국토면적에서 비교하거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면적으로 비교하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을 다양한 면에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면 환해의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가 접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목해 국경이 갖는 의미에 대해 역사적 경위를 전제로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국제법에 입각해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하는 영토문제나 해양, 해저자원의 관리를 포함한 경제수역의 문제 등에 착목하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취급하도록 할 것(내용의 취급)에 대해서는 죽도와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도로후)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함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이나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죽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는 점,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러한 영토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취급하고,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취급한다](내용의 취급)라고 되어 있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고, 해결해야만 하는 영유권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그 위치나 범위와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p>

역사	<p>(요령) [부국강병·식산흥업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책 아래 신정부가 행한 폐번치현, 학제·병제·세제 개혁, 신분제도의 폐지, 영토의 획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그 경우, 북방영토에 대해 언급함과 함께 죽도, 첨각제도의 편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p> <p>(해설) 부국강병·식산흥업 정책에 대해서는, [폐번치현, 학제 병제 세제의 개혁, 신분제도의 폐지, 영토의 획정](내용의 취급) 등을 취급하고, 학제 등 오늘날에 이어지는 제 제도가 만들어진 점이나 신분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차별이 남아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영토의 획정]에서는 러시아와의 영토의 획정을 비롯하여 류큐의 문제나 북해도의 개척을 다룬다. 그 경우,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가 일관해서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국경설정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함과 함께 죽도,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u>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u>, 이들 영토에 대한 <u>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u> 또한 중국이나 조선과의 외교도 다루도록 한다.</p>
----	--

이전(2014년)의 해설에서는 특히 역사에서 강조되었던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지리와 공민에서도 함께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새로운 해설 개정에 의하면 일본 중학교의 역사, 지리, 공민의 모든 교과서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교육에서 (1)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이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고, 이에 (2)일본은 한국에 항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3)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4)이러한 일본 측의 입장과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라고 기술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교육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2015년에 검정을 마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특히 진보적인 교과서로 알려진 일본문교출판의 경우에 있어서 이미 개정 해설 내용과 같은 독도에 관한 기술이 확인되고 있다. 독도를 비롯한 영토 관련 기술에 관한 한, 출판사(집필자)의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를 불문하고 기술 내용이 제도적 강제를 통해 이미 획일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2015년 검정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기술

역사 교과서	독도 관련 내용
교육출판	<p>[현재에 남겨진 과제~일본의 영토를 둘러싸고](257쪽) 죽도(시마네현) 죽도는 일본해에 위치하는 동도와 서도 등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1905(페이지38)년의 각의결정으로 '죽도'로 명명되어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1954(쇼와29)년부터 섬에 경비대를 상주시켜 불법적인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항의함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합의에 의한 해결을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p>
일본문교출판	<p>「한국·중국과의 국교정상화와 현재의 과제」(265쪽) 죽도에 대해서는 약간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정부는 1905년에 각의결정에 의해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정식으로 일본 영토로 삼았습니다. 그 후, 1951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할 영토 범위에 죽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한국은 이에 죽도를 포함시키도록 요망했습니다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행하여 수산물 등에 대해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소위 '이승만라인'을 공해상에 설정하여 그 라인 내에 죽도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는 경비대를 죽도에 상주시킴과 함께 숙사과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설치했습니다. 일본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위에 거듭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동년 죽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안을 한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³⁸⁾</p>

마지막으로, 새로 개정된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요령과 해설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⁹⁾

38) 진보계열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일본문교출판의 경우, 독도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일본이 반환해야 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독도를 둘러싼 일본 측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그 근거자료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현행 중학교 교과서 기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본문과 함께 「점령지의 일본 복귀와 근린제국과의 관계」 지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죽도를 일본 영해 내에 표시하고 있으나 '일본해' 표기는 보이지 않고 있다. 출판사 측이 의도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 누락인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힘들다.

39) 일본문부과학성,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헤이세이30년 고시) 해설』 지리역사편(헤이세이 30년7월)에 의한다.

〈표 4-6〉 고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내용

분야	요령 및 해설 내용
지리 종합	<p>(요령)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는 세계적 시야에서 일본의 위치를 파악함과 함께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언급할 것.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이 수행하는 역할을 언급함과 함께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취급하도록 할 것. 그 경우,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룰 것.</p> <p>(해설)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언급(내용 취급)에 대해서는, [세계적 시야에서 일본의 위치를 파악할] 때에 언급함과 함께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이 수행하는 역할을 언급할] 때에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경우,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취급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죽도와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의 영토문제와 경제수역의 문제 등을 언급하고, 국경이 지나는 의의와 영토문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당면하는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죽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함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이나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죽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는 점,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러한 영토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적확하게 취급하고,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경우,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취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고, 해결해야만 하는 영유권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그 위치나 범위와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p> <p>(요령) [영토문제의 현상과 요인, 해결을 위한 대처]에 대해서는 그것을 취급할 때에 일본의 영토문제에도 언급할 것.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이 수행하는 역할을 언급함과 함께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취급하도록 할 것. 그 때에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취급할 것.</p> <p>(해설) [일본의 영토문제에도 언급할 것](내용 취급)에 대해서는 세계적 시야에서 [영토문제의 현상과 요인, 해결을 향한 대처]를 취급할 때에 언급함과 함께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이 수행하는 역할을 언급할] 때의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로서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경우,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취급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죽도와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의 영토문제와 경제수역의 문제 등을 언급하고, 국경이 지나는 의의와 영토문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당면하는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죽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함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이나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연방</p>

	<p>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죽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는 점,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러한 영토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적확하게 취급하고,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경우,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취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서 현재(실제) 우리나라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그 위치나 범위와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p>
<p>역사 종합</p>	<p>(요령) 또한 일본의 국민국가의 형성 등에 대한 학습에 있어서 영토의 획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그 때에 북방영토에 언급함과 함께 죽도, 첨각제도의 편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p> <p>(해설) 또한 [영토의 획정 등](내용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러시아 등과의 사이에 국제적으로 확정된 점을 취급. 그 경우,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가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국경설정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언급함과 함께 죽도,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해 이러한 영토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p>일본사 탐구</p>	<p>(요령) 페이지유신이나 국민국가 형성 등의 학습에 있어서 영토의 획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그 경우, 북방영토에 언급함과 함께 죽도, 첨각제도의 편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p> <p>(해설) 또한 [영토의 획정](내용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러시아 등과의 사이에 획정되었다는 점을 비롯해 오키나와 현의 설치와 홋카이도(북해도)의 개척을 취급한다. 그 경우,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가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국경설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함과 함께 죽도,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영토로 편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해 이러한 영토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고등학교 개정 해설 내용은 앞서 본 중학교 사회과의 해설 내용과 커다란 차이는 없으며, 역사의 경우는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영토로 편입했다는 점, 영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리의 경우는 여기에 고유영토+한국 불법점거+지속적 항의 사실을 부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설서 개정의 내용은 마찬가지로 다음에 제시한 2016-17년 검정의 현행 일본사 교과서에 이미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2014년의 해설서 개정 내

용에 기초한 교과서 검정 결과와 커다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표 4-7〉 고교 일본사 독도 관련 내용

일본사	내 용
산천출판사	상설 일본사 「메이지초기의 대외관계」(274쪽) ‘메이지시대 초기의 일본의 영토 지도’를 게재하고(단, 지도상에 죽도 표기는 없음), 본문 내용으로, 남북 양 방면에 걸친 일본의 영토가 국제적으로 확정(*주)되었다. 주) 첨각제도는 1895(메이지28)년 1월에, 죽도는 1905(메이지38)년 1월에 각각 타국이 점령한 형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위에서 일본의 영토에 편입했다.
명성사	최신 일본사 [일본의 과제와 자립에의 선택](270쪽) 영토문제에도 과제가 많다. 북방영토는 러시아에 점령되고, 시마네현의 죽도는 한국에 불법점거 되어있다.
실교출판	일러전쟁 중인 1905년 1월, 일본 정부는 竹島를 시마네현의 관할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1952년부터 한국 정부가 竹島(한국명 독도)를 실효지배하려고 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고교 일본사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를 자랑하는 산천출판사의 경우, 본문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주)에서만 “죽도는 1905(메이지38)년 1월에 각각 타국이 점령한 형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위에서 일본의 영토에 편입했다.”고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독도에 대한 최초의 영토편입임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고교 일본사 교과서 가운데 일본회의와 관련이 깊은 가장 우익교과서라 할 수 있는 명성사의 경우는 한국의 불법점거를 명기하고 있다. 실교출판의 경우, 비교적 자세하게 적고 있으며 한국의 ‘실효지배’를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명성사의 불법점거 기술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일본 고유의 영토,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 요청 등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의 경우는 독도에 관한 서술내용이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테 이는 물론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 명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 단계 즉 중학교에서의 학습 내용을 전제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⁰⁾

4. 영토교육의 메커니즘

1) 영토교육 매커니즘

지금까지 학습지도요령해설과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했다. 여기서는 근년의 일본의 독도교육·영토교육이 얼마나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일면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더 나아가 최근의 독도교육·영토교육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최대의 기회로 활용할 의도로 마련된 영토·주권전시관 신설 개장이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학교교육의 장을 벗어나 국민교육의 장(더 나아가 세계시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의 장)으로 시프트가 전환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요컨대 일본정부의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토교육이 강화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제시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즉 교과서 기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닌 해설서에 영토교육의 지침이 되는 사이트를 제시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해설에는 ‘해설 개정의 개요’와 ‘유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1. 해설 개정의 개요

(1) 영토에 관한 교육의 충실에 대해

① 중학교 사회(지리/역사/공민)

② 고등학교 지리역사·공민

40) 이와 관련해서는 남상구, 「전후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1, 동북아역사재단, 2011, 홍성근,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실태와 그 영향」, 인터넷자료, 동북아역사재단, 2008 등 참조.

2. 유의사항

각 학교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이하에 제시한 자료 등도 활용하면서 학생의 발달단계와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지도의 충실을 도모하기 바란다.

고 전제하고, 구체적인 활용자료로서 「영토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한 자료 사이트를 제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홈페이지(<http://www.mext.go.jp>)에 있는 「사회과에 관계되는 교재나 자료집 등의 웹사이트에 대하여」에 사회과에 관계되는 예를 들면 이하의 교육 내용에 관한 교재나 자료집 등의 어드레스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 내용을 지도할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하에 해당 항목으로 ‘해양에 관한 교육’~‘영토에 관한 교육’ 등이 명시되어 있다.

参考資料 4

社会科に関する教材や資料集等について

文部科学省ホームページ (http://www.mext.go.jp/a_menu/shotou/new-cs/1383986.htm)にある「社会科に関する教材や資料集等のウェブサイトについて」に、社会科に関する、例えば、以下の教育内容に関する教材や資料集等のアドレスを掲載しております。各教育内容を指導する際の参考としてご利用下さい。

※ 項目名は五十音順

- ・ 海洋に関する教育
- ・ 金融に関する教育
- ・ 社会保障に関する教育
- ・ 主権者教育
- ・ 消費者教育
- ・ 臓器移植に関する教育
- ・ 租税に関する教育
- ・ 地理に関する教育
- ・ 農業に関する教育
- ・ ハンセン病に関する教育
- ・ 法に関する教育
- ・ 放射線に関する教育
- ・ マイナンバーに関する教育
- ・ 薬害に関する教育
- ・ 拉致問題に関する教育
- ・ 領土に関する教育
- ・ ワークルールに関する教育
- ・ その他の基礎資料

활용자료로서 제시된 「영토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에 관련된 사이트

를 보면, 외무성 홈페이지, 내각관방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 [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가 실려있는 외무성 팸플릿으로 연결되고 있다.

〈領土に関する教育について〉

(1)外務省のホームページ

- 北方領土問題 <http://www.mofa.go.jp/mofaj/area/hoppo/>
- 竹島問題 <http://www.mofo.go.jp/mofaj/area/takeshima/>
- 日中關係(尖閣) <http://www.mofo.go.jp/mofoj/area/senkaku/>

(2)内閣官房領土・主權對策企畫調整室のホームページ

<http://www.cas.go.jp/jp/iyodo/index.html>

(3)外務省パンフレット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http://www.mofo.go.jp/mofaj/area/takeshima/pdfs/pmp_10issues.pdf

다시 외무성 홈페이지의 「죽도문제」에 대한 사이트에서는 내각관방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 시마네현 사이트와 링크되어 있고, 내각관방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 역시 외무성 및 시마네 현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다.



関連リンク集

- ▶ [外務省\(日本の領土をめぐる情勢\)](#)
- ▶ [内閣官房 領土・主権対策企画調整室](#)
- ▶ [竹島資料ポータルサイト](#)
- ▶ [竹島に関する資料調査報告書\(PDF\)](#)
- ▶ [島根県\(竹島関係\)](#)
- ▶ [日本国際問題研究所\(領土・海洋コーナー／竹島\)](#)
- ▶ [笹川平和財団海洋政策研究所島嶼資料センター](#)

더욱이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산하의 국제연구소(일본국제문제연구소) 및 지자체(시마네현), 그리고 민간기관(사사카와재단)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websit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トップ' (Home), '防災・安全' (Disaster Safety), '観光' (Tourism), '子育て・教育' (Childcare/Education), and '医療・福祉' (Medical/Welfare). The 'Web竹島問題研究所' (Web Takekushima Issue Research Institute) section is highlighted, listing 'リンク集' (Link Collection), 'Web竹島問題' (Web Takekushima Issue), '島根の活動' (Shimane's Activities), and '竹島資料室' (Takekushima Archives). The '竹島関係' (Takekushima) section is also visible, with a sub-section for 'トピックス' (Topics) which currently shows '現在トピックスはありません。' (There are no current topics).

The screenshot shows the Japanes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website. The '領土・海洋コーナー' (Territorial and Marine Corner) section is active, featuring a '公式情報' (Official Information) table and a list of publications. The table lists '竹島問題' (Takekushima Issue) as '外務省中'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竹島問題に関する基本的な立場の整理' (整理 of basic positions regarding the Takekushima Issue) as '島根県中' (Shimane Prefecture). The list of publications includes 'Islands Files', 'Takasaki Tsukamoto, "An Outline of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akekushima"', and 'Kobayashi Yoko, "The Creation of a Basis for the Assertion of Takekushima by the Korean Government"'.



결국 이처럼 상호 구조적으로 연계된 영토교육 메커니즘을 통해 일본 정부의 주장인 외무성의 공식 견해가 바로 학습지도요령해설의 개정 내용이 되었고, 그 학습지도요령해설이 문무성의 교과서 검정의 기준이 되어 초중고 교과서에 가장 강화된 기술, 즉 외무성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⁴¹⁾과 일치된 기술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새 영토주권전시관 오픈

최근 일본의 영토교육 강화와 관련해 두드러진 움직임 가운데 하나는 2020년 1월 21일에 도쿄에 새 영토·주권전시관이 오픈되었다는 것이다.

- 41) 일본 외무성 사이트에는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게시되어 있는데,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타이틀 하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아울러 “(주) 한국 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부기되어 있다.

お知らせ
イベント情報
団体申込予約
アクセス

領土・主権展示館

1月21日(火)10時 一般公開



次の世代へつなぐ、日本の領土と人々の想い

国際社会の法と秩序を
尊重する日本の対応

北方領土問題
について

竹島問題
について

尖閣諸島をめぐる
情勢について



所在地	東京新子代田区館の隣1-8-1 池袋西武ビルディング内 〒112-8601 池袋駅西口 ※平日はご来場者の入り口、土日祝は有楽町線側の入口をご利用ください。
開館時間	10時～18時
休館日	日曜日（有楽町線が不通となる場合はその次の平日休館日） 年末年始（12月29日～1月3日） ※ 2月1日（祝）は日曜日の休館日です。
入館料	無料
駐車場	東京メトロ 池袋駅「池袋西武ビル」3階（1,200台） 東京メトロ 丸の内線「池袋駅」3階（約1,000台） 東京メトロ 丸の内線「池袋駅」3階（約1,000台） 東京メトロ 丸の内線「池袋駅」3階（約1,000台）

전시관이 새롭게 오픈한 도쿄의 가스미가세키는 국회와 총리관저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나가타초와 함께 일본의 심장부이다. 이 영토주권 전시관의 오픈은 말할 나위도 없이 국민에 대한 영토주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었고 한발 더 나아가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국제적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의 세계적 확산 및 이 여파로 인한 도쿄올림픽 연기라는 악재로 말미암아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했지만 말이다.

이제 독도를 포함한 영토교육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교육현장을 넘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교육의 장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어를 대신해

지금까지 현재 일본의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가운데 초등학교 3종, 중학교 8종, 고등학교 3종을 대상으로 일본의 영토 교육 특히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죽도])에 대한 서술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아베 정권 하에서 보다 강화된 교과서 검정제도

와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의 관련성, 학습지도요령과 동 해설서의 관련성, 그리고 해설서 내용과 검정기준과의 관련성, 나아가 영토교육 강화를 추진하는 아베 정권의 내각부, 문부성, 외무성, 독도 관련 지자체 시마네현, 정부 산하 및 민간의 각 기관들이 유기적·구조적 관련성 속에서 추진되는 영토교육의 메커니즘을 확인했다.

그 결론으로서 우선, 교과서 검정 시스템(아베 정권 하에서의 실질적인 국정교과서)에 의해 독도 기술(영토교육)이 종래 지리와 공민교과서에서 주로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현재에는 거의 모든 역사교과서에서 독도문제를 가장 강도가 높은 단계의 기술 즉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한국의 불법점거”라는 가장 강도 높은 4단계로 기술하고 있는 점,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점, 무엇보다도 교사용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명시된 내용이 그대로 교과서 내용에 직접 반영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 내용이 곧 교과서 검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국 일본 외무성의 외교적 주장이 그대로 학습지도요령 해설과 교과서 검정 시스템을 통해 그대로 교과서에 기술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본의 독도 교육은 결국 내각부 및 문부성과 외무성, 지자체인 시마네현이 하나가 되어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주의를 요하며, 최근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코로나19 여파로 개최가 연기되었지만) ‘영토·주권전시관’의 개설을 통해 독도교육이 학교현장을 넘어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전제로 하면 앞으로의 독도기술·독도교육은 아베 정권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더욱더 구체화되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토교육과 일체화된 역사교육에서는 아베정권(제1차내각)에서 개정된 애국심과 향토애, 전통과 문화중시를 강조하는 교육기본법에 입각한 자국 및 자문화중심주의 교육이 강화되어, 고대사의 기술에서는 기기신화를 비롯한 신화에 대한 내용의 강화, 이른 시기의 강대한 고대국가상,

한반도제국에 대한 일정한 우위 즉 영향력, 중국과 대등한 왜국(일본)의 위상을 강조하는 서술로 되어있고, 그 상징적인 존재로서 유독 성덕태자가 강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여기에 기기신화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관인, 식민사관의 원점인 황국사관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필자만의 과민한 생각일까.

역사교육의 목적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어린 학생들에게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 교양과 품위를 지닌 일국의 국민, 세계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는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는데 있을 것이다.

사실, 우익을 대표하는 육봉사의 중학사회 교과서는 ‘세계를 위한 일본의 역할’(273쪽) 부분에서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국민이 일체감을 유지해 나가고 근면하고 예절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드문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속의 대국인 일본은 앞으로도 뛰어난 국민성을 발휘하여 국내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제공헌을 해 나가는 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유사 교과서 역시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273쪽)에서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즉

“2006(헤이세이 18)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고, 그것들을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함과 함께 **타국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양성한다’라는 교육목표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이어 “일본에는 예부터 아름다운 전원과 운택

42) 나행주,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 『식민사학의 고대사 왜곡과 영토문제』 홍익재단, 『식민주의 역사학 비판과 전망 2019 제4차 Conference』 자료집, 2019.08.

한 사회를 만들어 온 풍부한 전통이 있다.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일본인은 자신의 역사에 자신과 자부를 갖고, 뛰어난 일본문화를 세계에 발신하고,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고 마무리하고 있다.

진정으로 두 우익교과서가 목표로 삼은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자유사 교과서의 내용(밑줄 부분)에 사족을 더하자면, 자신(자기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신과 자부는 물론 필요하다. 문제는 그것이 지나쳐 타자(상대국)에 대한 편견과 비하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타국에 대한 존중의 마인드, 일본에게 있어 타국에 한국과 아시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일본인이 그리는 세계는 여전히 메이지시대와 마찬가지로 구미제국의 서구사회뿐인가? 또한 일본인에게 요구되는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는 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작금의 한일관계를 보면, 현재의 일본에는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지배층의 생각인 정한론, 탈아론의 의식이 150년이 지난 2020년 현재에도 여전히 '신정한론', '신탈아론'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계승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아베로 대표되는 지배층에게는 말이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 속에는 한국과 아시아는 결코 없다. 여전히 구미 즉 미국과 유럽만이 보이고 있을 뿐이다.

아베의 주도로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든 '타국에 대한 존중', 그 타국의 중심에 고대시대 이래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운영과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고전문화·전통문화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 한국·한국인이 자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강조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 적어도 동아시아 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존재가 아닌, 동아시아의 평화와 우호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일본국, 일본인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참고문헌

〈교과서와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

고등학교 일본사 산천출판사(詳說日本史), 명정사(最新日本史), 실교출판(日本史), 교육출판(地理) 2016년 김정본.

文部科學省,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 地理歴史編(平成30年7月)].

文部科學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 社會編(平成29年7月).

文部科學省, 中學校學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 社會編(平成29年7月).

중학교 사회과 역사 동경서적(新しい社會 歴史), 교육출판(中學社會 歴史), 일본문교출판(中學社會 歴史的分野), 제국서원(中學生の歴史), 육봉사(新編 新しい日本の歴史), 자유사(新しい歴史教科書) 2015년 김정본.

[中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 及び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の一部改訂について(通知, 25文科初第1159号, 2014년 1월 28일.

초등학교(소학교) 사회 5학년 교육출판(小學社會), 일본문교출판(小學社會), 동경서적(新編 新しい社會) 2014년 김정본.

초중고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 2017(초중)-2018년(고) 개정본.

〈관련 사이트〉

내각부, 외무부, 교육부, 시마네현, 공공 및 민간단체 등

(1)外務省のホームページ

- 北方領土問題 <http://www.mofa.go.jp/mofaj/area/hoppo/>
- 竹島問題 <http://www.mofo.go.jp/mofaj/area/takeshima/>
- 日中關係(尖閣) <http://www.mofo.go.jp/mofoj/area/senkaku/>

(2)内閣官房領土・主權對策企畫調整室のホームページ

<http://www.cas.go.jp/jp/iyodo/index.html>

(3)外務省パンフレット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http://www.mofo.go.jp/mofaj/area/takeshima/pdfs/pmp_10issues.pdf

〈논문〉

- 김영수, 「한국과 일본 중학교 역사분야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2014년 전후 한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19, 2015.
- 김영수,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비교와 분석」, 『동북아 역사문제: 주요 현황 분석』 통권 81호, 2013.
- 김주식, 「한일간의 현안: 독도와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strategy 21』 제16권 1호, 통권 제31호, 2013.
- 나행주,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과 고대사 서술」, 『동국사학』 51, 동국사학회, 2011.12.
- 나행주,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 『식민사학의 고대사 왜곡과 영토 문제』 홍익재단, '식민주의 역사학 비판과 전망 2019 제4차 Conference' 자료집, 2019.08.23.
- 남상구, 「전후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1, 동북아역사재단, 2011.
- 남상구,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인터넷자료, 동북아역사재단, 2012.
- 남상구,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기술 현황과 전망」, 『교과서연구』 통권 76, 2014.
- 남상구,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과 시마네현 독도교육 비교 검토」, 『독도연구』 20, 2016.
- 남상구, 「집요하고 치밀한 일본의 독도 교육」, 한국교원신문, 2016.5.1.
- 박병섭,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와 독도문제」, 『독도연구』 11, 2011.
- 서보경,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대 한일관계 기술에 대한 분석-2015년도 검정 통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1, 2016.3.
- 송완범, 「일본국정역사교과서로 보는 '민족주의」, 『일본사상』 14, 2008.
- 송완범, 「일본근대검정교과서의 고대 한반도관련기술 분석」, 『일본연구』 29, 2018.
- 홍성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2016년과 2017년

-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14, 동북아역사재단, 2017.
- 홍성근,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실태와 그 영향」, 인터넷자료, 동북아역사재단, 2008.
- 황용섭, 「일본 초·중학교 교과서 독도 관련 내용 비교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56, 2017.4.

【ABSTRACT】

Descriptions of Dokdo in Japanese history textbooks and territorial Education

Na, Haeng-Joo

We examined Japan's territorial education, in particular, the descriptions of Dokdo (Takeshima in Japanese) from the social studies or history textbooks that are currently being used in the educational arena of Japan.

First of all, we confirmed the relevance of Japanese authorization system on textbooks, more strengthened than ever under the Abe government, and Dokdo-related descriptions, that of the educ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and its explanatory notes, and that of the contents of the notes and the textbook screening standards, plus the mechanisms of Japan's territorial education that are worked on to facilitate the education with the organic and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Education Ministry and the Foreign Ministry of the Cabinet of the Abe government.

In a conclusion, we confirmed de facto (1) Dokdo-related descriptions, or its territorial education, have been made through the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at the highest levels, as follows: "Dokdo is Japanese territory and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it," (2) that Dokdo-related descriptions in the textbook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Japan are much alike, (3) that, above all, the contents specified in the explanatory notes of the educ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serving as a

teaching manual are reflected in the textbooks as they are, (4) that accordingly the explanations of the educ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serve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for textbook authorization, (5) and that, in the end, a modus operandi is existent that the diplomatic claims of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are being made as they are in the explanatory notes of the educ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and in the textbooks through the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On the premise of the above mentioned, the Dokdo education in the future is increasingly expected to be fortified, as long as the Abe government keeps up its life.

【Key words】

Japanese history textbooks(역사교과서), territorial Education(영토교육), Dokdo-related descriptions(Descriptions of Dokdo 독도기술),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교과서검정), Educational Curriculum Guideline(학습지도요령), Explanatory Notes of Educational Curriculum Guidelines(學習指導要領解説)